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《 숙려기간 연장 》

■ 남인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6999호)

2025. 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정경윤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
I. 개요

1. 제안 경위

- (1) 제 안 자 : 남인순의원 등 15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12. 27.
- (3) 회 부 일 : 2024. 12. 30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,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.

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,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,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☐ 개정안은 보호출산 신청인의 아동 직접 양육을 위한 숙려기간을 7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).

[illegible]

현행	개정안
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2. 주요 검토 사항

- 2024년 7월 19일부터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으로 제도화된 ‘위기임신보호출산제’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,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로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하는 것임.
- 특히 이 법은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·운영하면서 ‘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’을 우선으로 하도록 명시함.

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
제7조(위기 임신·출산 등에 대한 상담) ① 출산·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.

1.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가. ~ 마. (생략)
2.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
3.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
4. (생략)

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④ (생략)

□ 2024년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2025년 1월 말 현재,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 현황을 보면, 1,072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3,91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, 보호출산을 신청한 73명 중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(17.8%)하였고, 보호출산을 철회한 13명 중 10명은 원가정 양육(76.9%)을 선택하였음.

<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 현황 >

구분	누계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
상담건수(건)	3,913	150	575	532	512	761	646	737
신규상담(명)	1,072	100	175	148	144	182	152	171
보호출산 신청	73	6	14	9	11	12	11	10

자료: 보건복지부

□ 세부적으로 보면, 1,072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주로 단순상담 비율(868건, 81%)이 많았고, 심층상담결과 원가정 양육(107건, 10%), 보호출산(60건, 6%)을 택한 위기임산부가 많았음.

< 상담 현황 >

(단위: 명)

계	심층상담				단순상담
	원가정 양육	출생신고 후 입양	보호출산 *철회 13명 제외	기타(미정 등)	
1,072	107 (10%)	20 (2%)	60 (6%)	17 (1%)	868 (81%)

자료: 보건복지부

□ 그리고, 보호출산 신청은 73명이 하였고, 이 중 보호출산 유지가 60명, 보호출산 철회는 13명(원가정 양육 10명, 입양 3명)임.

< 보호출산 신청 현황 >

(단위: 명)

보호출산 신청	보호출산 유지	보호출산 철회	원가정 양육	
			원가정 양육	입양
73	60	13	10	3

자료: 보건복지부

- 한편,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‘7일 이상’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,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아동 인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예외적으로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음(제12조제1항¹⁾ 및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3항²⁾).
- 개정안과 같이 출산 후 최소한 보장되는 ‘7일’의 숙려기간을 ‘14일’로 연장하는 경우, 출산 후 체력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은 후에 아동에 대하여 원가정 양육을 할 것인지 인도를 요청할 것인지 결정하게 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, 원가정 직접 양육 우선 원칙³⁾을 뒷받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

-
- 1)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(아동의 보호조치)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.
 - 2)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1조(아동의 보호조치)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3)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
것으로 보임⁴⁾. 참고로,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상담기관⁵⁾ 기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, 출산 후 7일간의 숙려기간은 심신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기를 돌볼 신체적,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가정 양육으로 마음을 돌리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진술한 바도 있음.

□ 다만, 학업이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아동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, 이러한 사례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대응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는 필요하겠음.

□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숙려기간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숙려기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나, 숙려기간 연장은 위기임산부 등 친생부모의 아동양육 부담, 정부의 양육 지원 규모, 수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⁶⁾

문 의 처
02) 6788-5500

4) 국회 예산정책처는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연 평균 1억 8,480만원으로 추계하였음.

5)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·세종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등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있음.

6) 일부 지역상담기관의 현장 의견으로, 아동의 안전, 위기임산부의 상황,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가중 등을 고려했을 때 숙려기간 연장은 당사자와 수행기관의 부담 가중의 우려가 있고, 현행법상 숙려기간도 7일 '이상'으로서 필요에 따라 산모와 상담을 통해 숙려기간을 7일 이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.